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0가단29879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서경원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은, 서우정
변 론 종 결 2021. 11. 23.
판 결 선 고 2021. 12. 2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 피고와 B 사이의 2017. 9. 22.자 179,385,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9,3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피고와 B 사이의 2017. 9. 22. 주식회사 C 남가좌동지점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179,385,000원 범위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9,3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7. 2. 28.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보증금액 297,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E은행으로부터 3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B은 위 신용보증서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소외 회사의 2017. 10. 11. 대출금 이자 지급 연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7. 11. 27. E은행에 298,663,9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소외 회사 및 피고, 소외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9578호로 구상금 및 손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299,399,3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서울 서대문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B과 F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66,27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위 판결의 가액배상액에 대한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 B의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가액 477,500,000원(= 2018. 8. 10. 기준 시가 955,000,000원 × 1/2)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B 채무) 411,230,000원 = 66,270,000원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과정

1) 피고와 B은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2017. 9. 20. F에게 7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B의 I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411,230,000원이었다.

2) 한편 위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이 2017. 9. 22. 피고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통하여 위 B의 I은행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7억 7,000만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411,230,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1/2인 179,385,000원은 B의 몫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좌에 매매대금 잔금 전액을 입금하여 피고가 사용하게 한 것은 결국 위 금액 상당을 B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B은 피고와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예금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690,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타에 소비되었다(또는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소비된 경우 이는 수탁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B과 피고 사이의 예금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청구취지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 및 B과 피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증여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사용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이 문제되고, 신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예금을 인출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바, 신탁자가 수탁자의 통장과 인장, 접근매체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신탁자가 통상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예금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 또한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은 예금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예금명의신탁계약의 수탁자로 예금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성준

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B의 채무를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B과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공동채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제2,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I은행의 채무는 B 개인 채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는 위 채무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B 몫(책임재산)은 결국 원고가 F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가액배상 판결을 받은 66,270,000원이라 할 것이다.